

한국체육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

일부개정 2023. 3. 7. 규정 제885호

1. 개정이유

- 상위법인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(' 22.02.07.)*에 따라,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금 관련 제반사항을 균형 있게 논의하고,
* 근거: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-431(2022.02.07.) 「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알림」

-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제도를 보완·정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취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※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일부개정안

제2조(등록금심의위원회) ① 「고등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(이하 “학교”라 한다)의 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(이하 “등록금”이라 한다)을 정할 때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21. 2. 2.>

② 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 2. 7.>

③ 위원회는 교직원(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), 학생, 관련 전문가(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)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, 학부모 또는 동문(同門)을 포함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구성단위별 위원 수, 위원·위원장의 선임방법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한다. <신설 2022. 2. 7.>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 <신설 2022. 2. 7.>

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, 장소, 안건 및 회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해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<신설 2022. 2. 7.>

1.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: 회의 개최 7일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) 전까지 통지

2. 회의 자료: 회의 개최 5일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) 전까지 송부

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신설 2022. 2. 7.>

⑧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22. 2. 7.>

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 12. 28., 2022. 2. 7.>

2. 주요내용

- 회의 소집 요건 및 절차 신설(안 제4조제1항제1호, 제3호)

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,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·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, 5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송부하도록 근거 마련

-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·발언 신설(안 제4조제1항제6호)

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회계, 예산 등 전문성이 있는 자료에 대한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이 아닌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3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제2조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합 의: 해당 없음
- 라. 붙 임: 개정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

한국체육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문

한국체육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**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**” 를 “**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**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) 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, 5일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) 전까지 회의 자료를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⑥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(제885호, 2023. 3. 7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4조(회의 등) ①</u>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<u>③</u>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,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</p> <p>④·⑤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4조(회의 등) ①</u> ----- -----</p> <p><u>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</u>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) 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, 5일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) 전까지 회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⑥</u>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</p>
<p><u>제5조(자료 요청 등) ①</u> (생 략)</p> <p><u>②</u> 총장은 다음 학년도 등록금 심의를 위한 첫 번째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심의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송부할 수 있다.</p>	<p><u>제5조(자료 요청 등) ①</u>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
	<p>부 칙(제885호, 2023. 3. 7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